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 가. 구미시승마장 월회원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숲속의 집)를 할인하여 자연휴양림 및 승마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숲속의 집 사용자의 주차료를 성수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나. 자연휴양림 숙박객 중 구미시승마장 월회원에게 비수기 60%,
성수기 30%의 할인율을 적용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붙임)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 중 숲속의 집 사용료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 숲속의 집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규모	사용기간	일반 사용자		구미시승마장 월회원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숲속의 집	26.44 m ² (황토)	1동/1일	70,000	49,000	49,000	28,000
	39.66 m ² (황토)	1동/1일	90,000	63,000	63,000	36,000
	46.27 m ² (황토)	1동/1일	110,000	77,000	77,000	44,000
	19m ² (황토)	1동/1일	50,000	35,000	35,000	20,000
	27m ² (황토)	1동/1일	70,000	50,000	50,000	28,000

1. 일반 사용자는 비수기의 경우 성수기 요금에서 3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2. 구미시승마장 월회원은 일반 사용자의 성수기 요금에서 성수기에는 30%, 비수기에는 6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3. 숲속의 집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u> ----- ----- ----- ----- ----- ----- -----.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생략) ②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분증 및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제시자에 한하며, 성수기(7~8월)동안은 예외로 한다.)</u>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u>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별표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 숲속의 집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 숲속의 집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규모	사용기간	사용료	비수기	비고	구분	규모	사용기간	일반 사용자		구미시승마장 월회원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26.44㎡(황토)	1동/1일	70,000	49,000	주차료 면제	숲속의 집	26.44㎡(황토)	1동/1일	70,000	49,000	49,000	28,000
	39.66㎡(황토)	1동/1일	90,000	63,000			39.66㎡(황토)	1동/1일	90,000	63,000	63,000	36,000
	46.27㎡(황토)	1동/1일	110,000	77,000			46.27㎡(황토)	1동/1일	110,000	77,000	77,000	44,000
	19㎡(황토)	1동/1일	50,000	35,000			19㎡(황토)	1동/1일	50,000	35,000	35,000	20,000
27㎡(황토)	1동/1일	70,000	50,000	27㎡(황토)			1동/1일	70,000	50,000	50,000	28,000	
※ 비수기(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30% 할인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일반 사용자는 비수기의 경우 성수기 요금에서 3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2. 구미시승마장 월회원은 일반 사용자의 성수기 요금에서 성수기에는 30%, 비수기에는 6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3. 숲속의 집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연중 통당 2회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1.26>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승마장 및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 승마장 월회원에게 성수기에는 30%, 비수기에는 60% 할인함에 따라 세입의 감소가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승마장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술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어려움

4. 작성자

산림경영과 산지개발계장 장지욱 (☎480-5881)

산림경영과 녹지8급 황민아 (☎480-5883)